

#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년 9월 20일  
전문위원 권오숙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: 2022년 8월 26일
- 나. 발 의 자: 고찬양 의원 외 14명
- 다. 회부일자: 2022년 9월 5일
- 라. 상정일자: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 
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22. 9. 20.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2022.1.13. 시행)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### 주요내용

- 인용조문을 정비함(안 제1조와 안 제2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51조, 제126조부터 제129조, 제131조부터 제134조
- 입법예고(2022. 8. 30.~ 9. 5.) 결과: 의견 없음

### 4.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권오숙)

#### 가. 개정취지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「지방자치법」(2022. 1. 13.시행)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 나. 주요 개정내용

- 안 제1조에서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관련 인용된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를 개정된 「지방자치법」 제51조
- 안 제2조에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 관련 제3호에 인용된 「지방자치법」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를 개정된 「지방자치법」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로, 제5호에 인용된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부터 제120조까지를 개정된 「지방자치법」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로 인용 조문을 정비함.

#### 다. 종합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**□ 지방자치법**

**제51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

**제126조(직속기관)**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(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), 소방기관, 교육훈련기관, 보건진료기관,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**제127조(사업소)**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**제128조(출장소)**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**제129조(합의제 행정기관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**제131조(하부 행정기관의 장)**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, 읍에 읍장, 면에 면장, 동에 동장을 둔다. 이 경우 면·동은 행정면·행정동을 말한다.

**제132조(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임명)**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, 시장이 임명한다.

② 읍장·면장·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,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.

**제133조(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)**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, 읍장·면장은 시장이나 군수, 동장은 시장(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)이나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)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**제134조(하부 행정기구)**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면·동은 행정면·행정동을 말한다.